

工事監理 ①

李明煥

서울合同技術開発公團
李明煥建築研究室

1. 序論
2. 工事監理의 定義 및 必要性
 - ① 工事監理의 定義
 - ② 工事監理의 必要性
3. 工事監理者의 位置

1. 序論

設計가 計劃이라면 工事監理는 其工事が 計劃대로 잘 進行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는 行為로서 建築士가 設計를 担當하였으면 工事監理 또한 当然히 重要한 業務中의 하나임은 言及할 必要 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建築士法이 制定된지 6年이 지나도록 法은 있으나 이의 適用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一部 建築士마저도 이 当然한 業務를 기피 내지 反對하였던 것이 1970年 1月에 이 業務의 現実化를 為하여 建築士法에만 있던 工事監理業務를 建築法 改正時 建築法 第六條에 挿入하게 된 것은 늦은 感은 있으나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후 大然閣火災를 筆頭로 各種 事故가 連發하면서 이 業務의 重要性과 切実함을 痛感하게 되었으나, 以上과 같은 重要性에 비추어 業務의 限界, 責任의 限界等 規準이 없어 建築士協會에서 自体規約을 만든 것이 있으나 그 内容 또한 未備한 点이 많아 其間 이 規約의 基礎를 만들때까지 參考로 하든 書籍들을 基準으로 数次 協會의 권유도 있고하여 不足하나마 봇을 들게 된 것을 未安하게 生覺하며 未備한 点은 鞭撻있기 바라며 上記한 바와 같이 하루 速히 業務에 関한 規準과 認識이 不

足하든當時에 規定한 工事監理報酬의 適切한 變動이 当局에 依하여 調整되어야 할 것이며, 建築士의 業務上 또는 建築을 뜻하는 여러분을 위하여多少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봇을 들어 본다.

2. 工事監理의 定義 및 必要性

① 工事監理의 定義

建築士法 第2條3項에 「이法에서 工事監理라 함은 工事が 設計図書대로 實施되는 與否를 建築士가 確認하는 行為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日本의 態井安義著 建築의 工事 監理에서는 「建築工事を 建設業者가 請負施工 할 때, 建築主로부터 依頼받아, 그 工事を 設計図書와 対照하여, 工事が 그 設計図書대로 實施되는지의 與否를 其者の 責任으로 確認하는 業務를 工事監理라 한다.」로 되어 있으며 建設經營社發行 建築工事監督要領에서는 工事監理者와 監督員의 業務区分을 建築基準法에는 建築士法에 規定하는 建築物에 對하여 “建築主는 建築士인 工事監理者를 定하지 않으면 不成立”라고 또 上記한 “規定에違反된 工事는 할 수가 없다.”로 되어 있으며, 建築士法에서는 工事監理란 “其者の 責任으로 工事を 設計図書와 対照하여 그것이 設計図書대로 實施되는지의 與否를 確認하는 行為를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以上에 立即하여 法의 監督員의 業務는 施工計劃的範圍를 包含해서 다음事項을 遂行하는 것이다.

1. 工程表의 檢討, 承認
2. 各 工事種別 마다 施工計劃書의 檢討, 承認
3. 細部設計図, 原尺圖의 作成 및 檢討, 承認

4. 材料의 檢查 및 試驗

5. 施工立会

6. 施工検査

라고 建築士의 監理業務와 監督者の 業務를 明確하게 区分하고 있다.

또한 工事 監理를 더욱 区分하여 設計監理 施工 監理로 区分한 것도 있다.

岡村宏著 建築設計, 施工監理의 「포인트」에서는 “設計監理” 設計図書를 明確하게 把握하기 為하여 現場施工에 必要한 工作図 施工図를 作成할 必要가 있다. 特히 일하는 사람들이 設計図書를 充分히 理解를 하고 其意図를 100% 表現하기 為하여 絶對 必要한 것이다. 翁翁 이것을 소홀히 하여 設計図書와 다른 結果를 초래하게 되므로 注意해야 한다. “施工監理”는

첫째 請負業者로 부터 提出되는 図書들을 신속히 체크 处理하고

둘째 施工이 設計図書 또는 工事監理者の 指示한 것과 같이 實施되는지의 與否를 체크하며

셋째 不意의 災害에 대하여 臨機応變의 措置를 신속히 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우리는 무엇을 工事監理라고 하겠느냐 또 監理者와 監督者の 業務区分과 建築設計만을 擔当한 設計監理와 施工에만 臨하는 施工監理를 区分担当하였을 境遇의 損益問題를 考慮치 않을 수 없으며 工事監理의 重要性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土法에는 없으나 日本의 建築士業務中에는 建築主와 請負業者間に 工事契約이 이루어질 때는 建築士가 立会하여 技術的인 諮問과 協力を 하도록 되어 있어 日本建築家協会에서는 工事監理란 「適正한 工事契約에 協力하되, 建築家の 設計意図를 実現하며, 工事が 契約에 合致하도록 하며, 公正한 立場에서 施工者를 指導하는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② 工事監理의 必要性

한개의 建築物을 建築하기 為하여 建築主와 建築業者間に 定해진 基地條件 밑에 設計図書대로一定한 期間에 定한 工事費内에서 施工, 竣工検査에 合格이 되면, 工事費의 支拂과 無工된 建築物을 建

築主에게 引渡된다는 式의 注文生産物이나 其注文한 設計図書가 제아무리 精密하게 作成되었다 하더라도 建築物 全般에 대해 説明해 줄 수는 없을 뿐더러 時時刻刻으로 進捗되는 各種工程에서 이러나는 变化와 工事現場周辺의 狀況變化 및 各種資材의 变化 또는 質의 差異等에서 蒼起되는 問題들과 工事後에는 判断하기 어려운 工事進捗中에만 確認할 수 있는 鉄筋配筋과 同 結果狀態나 各種 配合物의 配合程度의 確認等을 示方書에 일일히 明記할 수 있다 손 치드라도 工事進行中에 確認 또는 判断処理치 않으면 않되는 것이며 上의 必要하면서도 技術의 判断을 내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特히 서로 利害關係가 相反될 수 있는 建築主와 建設業者間에 있어서는 意見衝突이 發生되기 쉬운 問題인 同時に 훌륭한 建築物을 期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것을 公正한 立場에서 事前防止乃至는 判断을 해야 할 사람이 建築士인 工事監理者일 것이다.

普通 어떤 注文品을 注文하였을 境遇라면 完成된 物件이 마음에 안든다고 했을 때, 契約의 無効 또는 契約金에 对한 損害를 보고 그만둔다든가 찾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크든 적든 不動의 基地(地上)에 注文한 建築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해서 이를 引受拒否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느 程度의 補修後 引受치 않을 수 없는 不動產인 建築物이기 때문에 發注內容을 作成한 設計者인 建築士가 이를 未然에 防止키 위해 工事進行中不斷한 努力を 하여야 할 것이며, 不得已한 何者가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工事費支拂等에도 関與調整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適切한 工程에 依하여 圓滿히 工事が 進捗되어가고 있는지의 與否를 恒常 檢討하며 各種 工程의 管理까지도 行할 수 있는, 即 工事監理의範圍까지도 할 수 있는 工事監理者가 바람직하다.勿論 여기에는 보다 많은 報酬가 따라야 할 것이며前述한 바와 같이 建築主와 建設業者間에公正한 立場이 될 수 있는 境遇에 限해서의 意味인 것이다.

3. 工事監理者의 位置

工事監理者는 누구를 為하여 있는 것인가? 日本의 建築学会, 建築士会, 建築家協会, 全國建設業協会의 連合協定에 依한 工事請負契約約款에 의하면 제6條에 監理技師는 註文主를 代身하여 契

約履行에 必要한 事務를 取扱한다로 規定되어 普通法의 으로는 建築主가 技術的事務를 委任하기 為하여 工事에 公入시키는 代理者이며 또한 建築主의 代理者로서 뿐 아니라 工事의 經過를 忠實히 記錄하는 公証人的 性格을 가지며 建築主와 請負業者 사이에서 公平하게 契約의 履行에 協力하는 職務를 맡은者란 해석도 있다.

以上의 다른 立場 即 建築主의 代理者인 同時に 公証人的이며 公平한 立場에 서야 한다는 것은 工事監理者가 技術的 良心을 가지고, 行動하며 또한 建築主가 工事監理者의 學識이나 技術, 人格等에 對한 信賴를 할 수 있다고 認定함으로써 成立되는 것이라고 生覺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現在의 狀態는 多少 差異가 있다고 生覺된다. 即 以上의 日本의 境遇는 建築主의 技術的 代理者이면서 契約의 忠實한 履行을 促進시키기 為하여라는 面에서는 前記 定義에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우리 나라 建築士法에는 工事契約時 立會나 技術的 諮問이나 協力を 해야한다는 業務上規制가 되어 있지 않아 建築主의 理解가 없는 境遇 建築主와 建設業者만의 合意에 依한 契約이 이루어질 경우가 許多함으로 特別히 이와같은 面에 있어 工事의 進行, 建築物의 質 또는 契約履行 與否에 對한 建築主의 損失이 큰 点은 앞으로 建築士法을 改正하여서라도 是正되어야 할 問題이기는 하나 現在로서는 特別히 建築主가 理解를 가지고 協力を 要請받기 前에는 別道理가 없으며 이를 工事監理者가 曰可曰否할 境遇 建設業者와의 言爭밖에 생길 수 없으며 따라서 工事監理의 實質的인 面에서 効率이 半減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現在 우리 나라에서 工事監理者를 最大限 活用, 特히 建築物의 各種 事故防止를 為하여 当局에서는 工事監理者에게 많은 義務와 責任을 지워볼려고는 하고 있으나

前記와 같이 工事監理者가 適正한 契約이 이루어지지 않은 條件下에 제아무리 努力を 해도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없을 뿐더러 아울러 不實한 工事로 因한 責任은 追求해 봤자 돌아올 수 없으며 單至 設計上의 違法事項만이 主要視되고 따라서 工事監理者란 建築物을 建築함에 있어 最少基準인 建築法上의 違法設計가 없으면, 그리고 이에 對한 工事進行中 變動만 없었다면 그것으로 忠實한 工事監理者로서의 役割은 다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建築士法 第2條 2項에 「“設計図書”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工事実施를 위하여 필요한 図面 및 示方書를 말하고……」되어 있으나 建築士 業務報酬基準 第2條 3項에서는 「實施設計라 함은 基本設計에 依하여 工事実施에 必要한 다음 各 設計図書를 作成하는 것을 말한다.

1. 設計図面(以下省略)
2. 示方書(以下省略)
3. 工事費內訳書
4. 構造計算書
5. 電氣, 電話, 까스, 給水, 排水, 換氣, 煙房, 冷房, 消火, 汚物處理의 設備, 基他 建築設備의 設計図……」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工事監理者는 上記한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 의당 工事費內訳上의 確認 또한 当然한 業務中의 하나이며 建築主와 建設業者間에 이루어지는 工事契約에 当然히 関與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또한 建築士法에 規制함은 '當然한 일이며 이것이 이루어 짐으로서 工事監理者가 契約의 忠實한 履行을 図謀하도록 하게됨은 勿論이려니와 一個의 建築物이 設計라는 (計劃이라는) 仮定에서 出発하여 所期의 目的物인 建築物을 現実化시키는데 名實相付한 工事監理의 實을 거두는 同時に 建築物의 發展이 이루되어지니라고 생각한다.

(계속)

〈바로 잡음〉

지난 三月號에 掲載된 「콘크리트의 高強度化動向」記事中(p. 49) 領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읍니다.

아래

p. 49 左便 밑에서 7째줄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에 계속해서 (p. 49) 右便 위에서 14줄 「하지만 高強度化를 期한다면……」로 이어지며 語尾에서 다시 左便의 밑에서 6째줄 「여기에 對하여 앞으로……(中略) …性格을 띠우게 될 것이다.」에서 右便 첫째줄 「따라서 構造物은……」으로 연결됩니다.